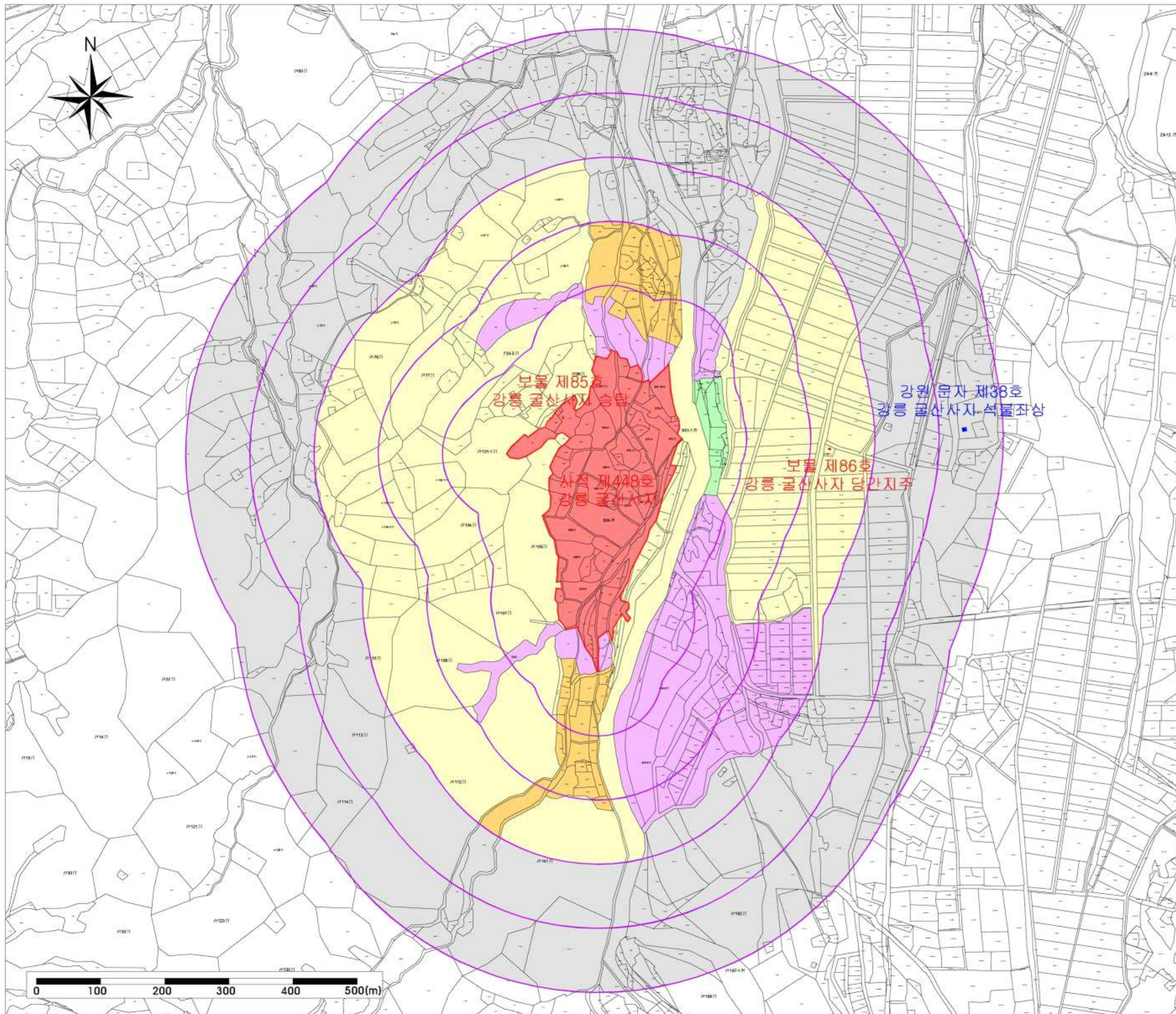
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1호, 2010.12.22)

사적 제448호
강릉 굴산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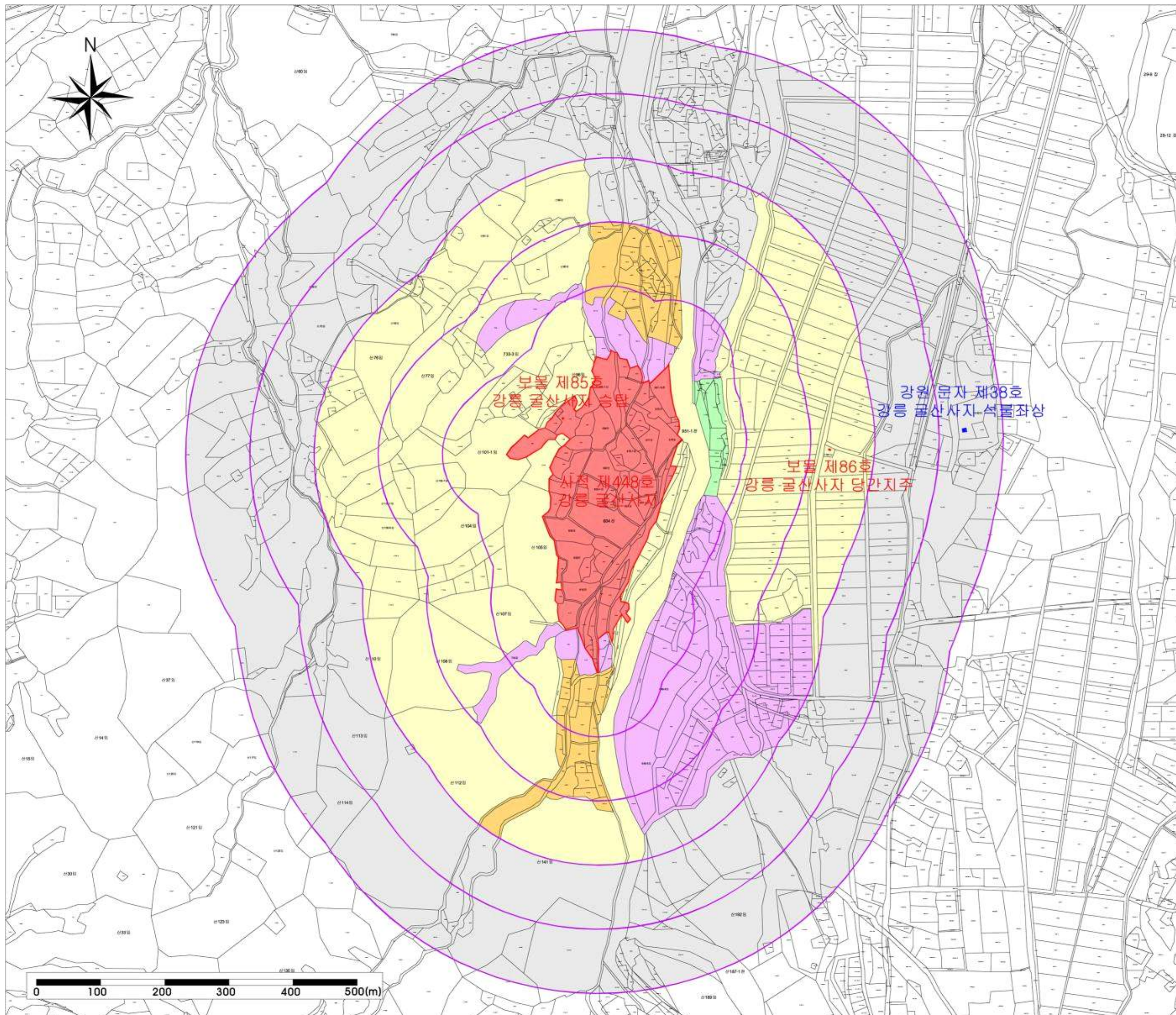
강원도 강릉시 구정면
학산리 597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 ◦보존구역		
2구역 ◦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		◦건축물 최고 높이 7.5m 이하
3구역 ◦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		◦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
4구역 ◦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		◦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
5구역 ◦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		
공동사항	◦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◦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◦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 (뿌리 깊은 마·경작 등) ◦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◦보물 제85호 굴산사지당간지주 주변(동·남·북편)은 당간지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별도 추가 검토	

축척 1 : 6,000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(신청안)

사적 제448호
강릉 굴산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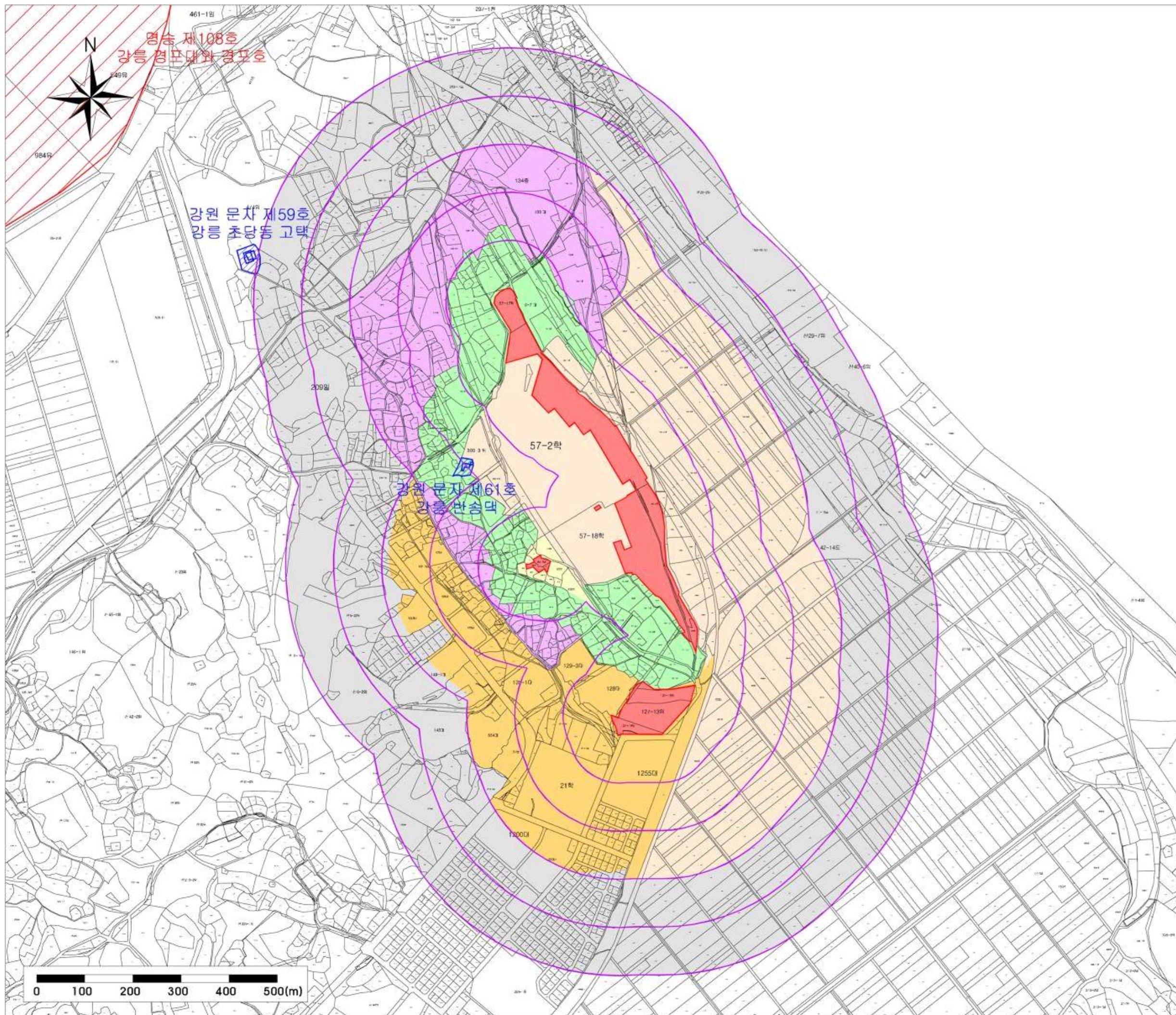
강원도 강릉시 구정면
학산리 597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개별심의	
2구역	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	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
3구역	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	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
4구역	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	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
5구역	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·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·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포함함. ·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· 문화재구역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·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. ·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. · 높이 3m 이상의 철·성도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 (지하층의 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선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.) ·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. 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· 국가지정문화재(보물 제85호 굴산사지당간지주) 주변 지역은 굴산사지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라 별도 추가 검토함.	

축척 1 : 6,000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(문화재청 고시 제2013-82호, 2013.08.23)

사적 제490호
강릉 초당동 유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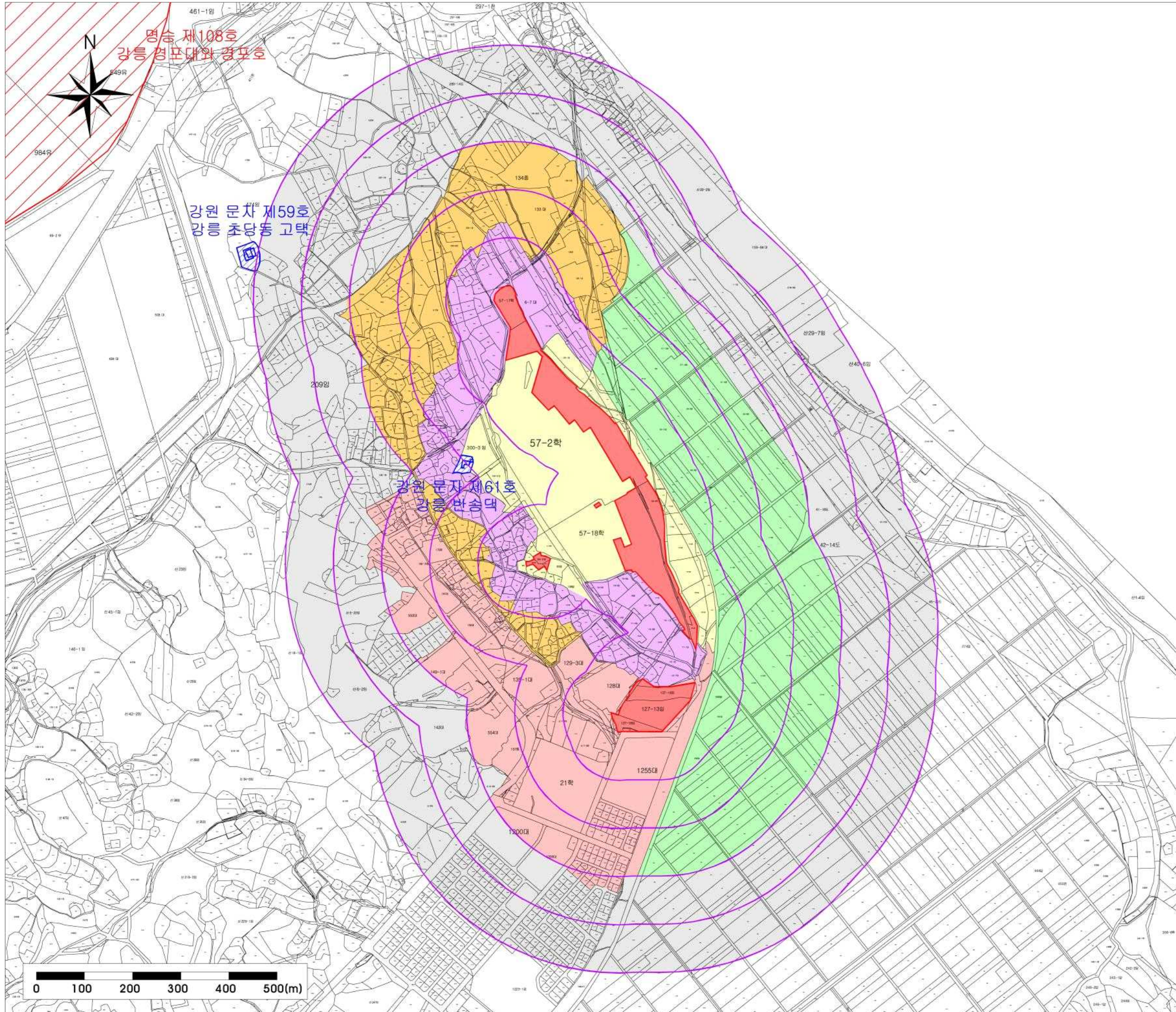
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-2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보존구역	
2구역	◦심의회역	
3구역	◦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	◦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
4구역	◦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	◦건축물 최고 높이 21m 이하
5구역	◦건축물 최고 높이 47m 이하	◦건축물 최고 높이 51m 이하
6구역	◦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	
공동사항	◦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◦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◦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(뿌리 깊은 마 걸작 등) ◦건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	

축척 1 : 8,000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(현지조사 의견안)

사적 제490호
강릉 초당동 유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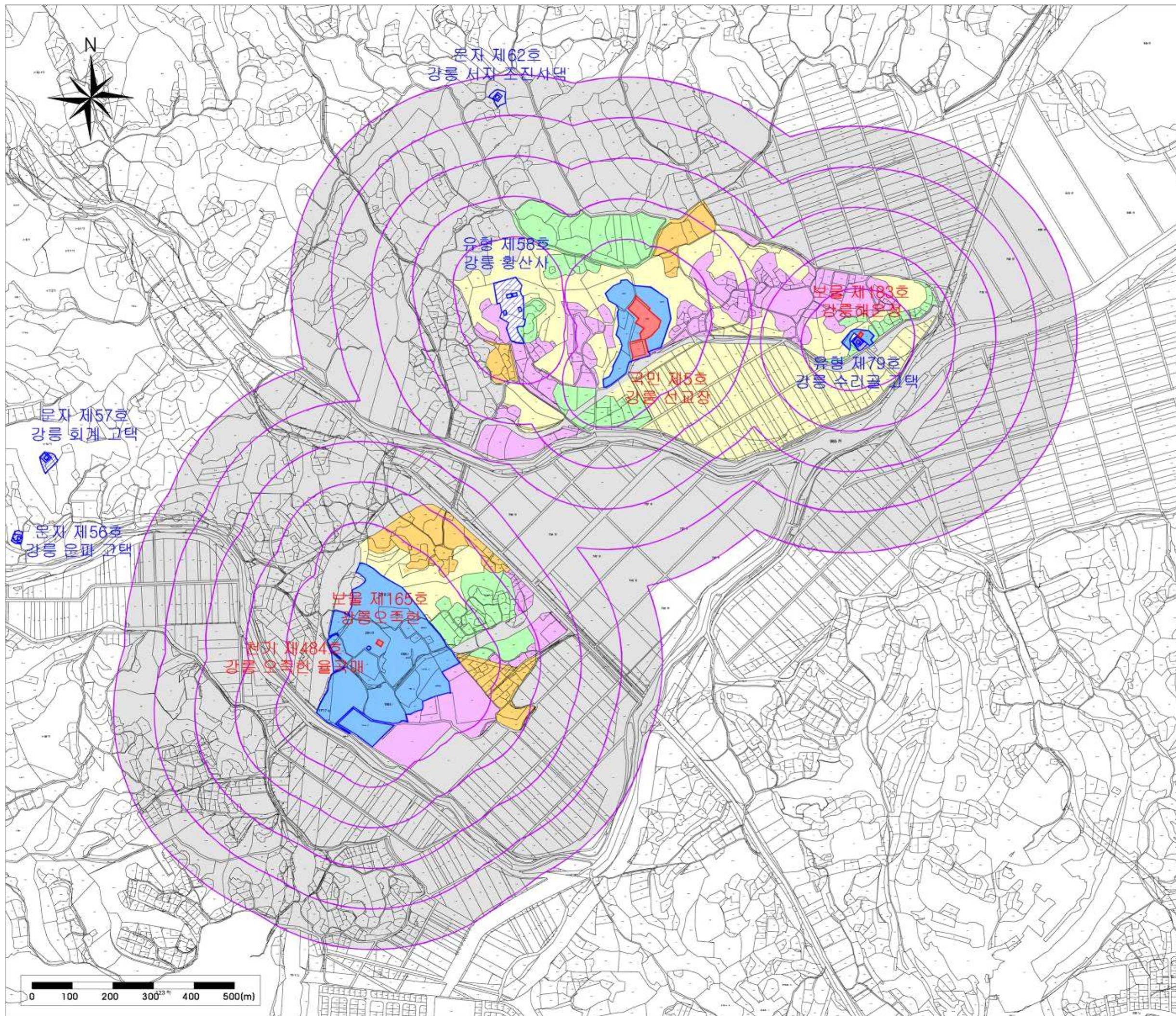
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-2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개별심의	
2구역	○ 최고높이 4m이하	○ 최고높이 5.5m이하
3구역	○ 최고높이 14m이하	○ 최고높이 18m이하
4구역	○ 최고높이 17m이하	○ 최고높이 21m이하
5구역	○ 최고높이 47m이하	○ 최고높이 51m이하
6구역	○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문화재구역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○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선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.)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.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

축척 1 : 8,000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(문화재청 고시 제2009-76호, 2009.09.11)

국가민속문화재 제5호

강릉 선교장 외

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보호구역
- 국가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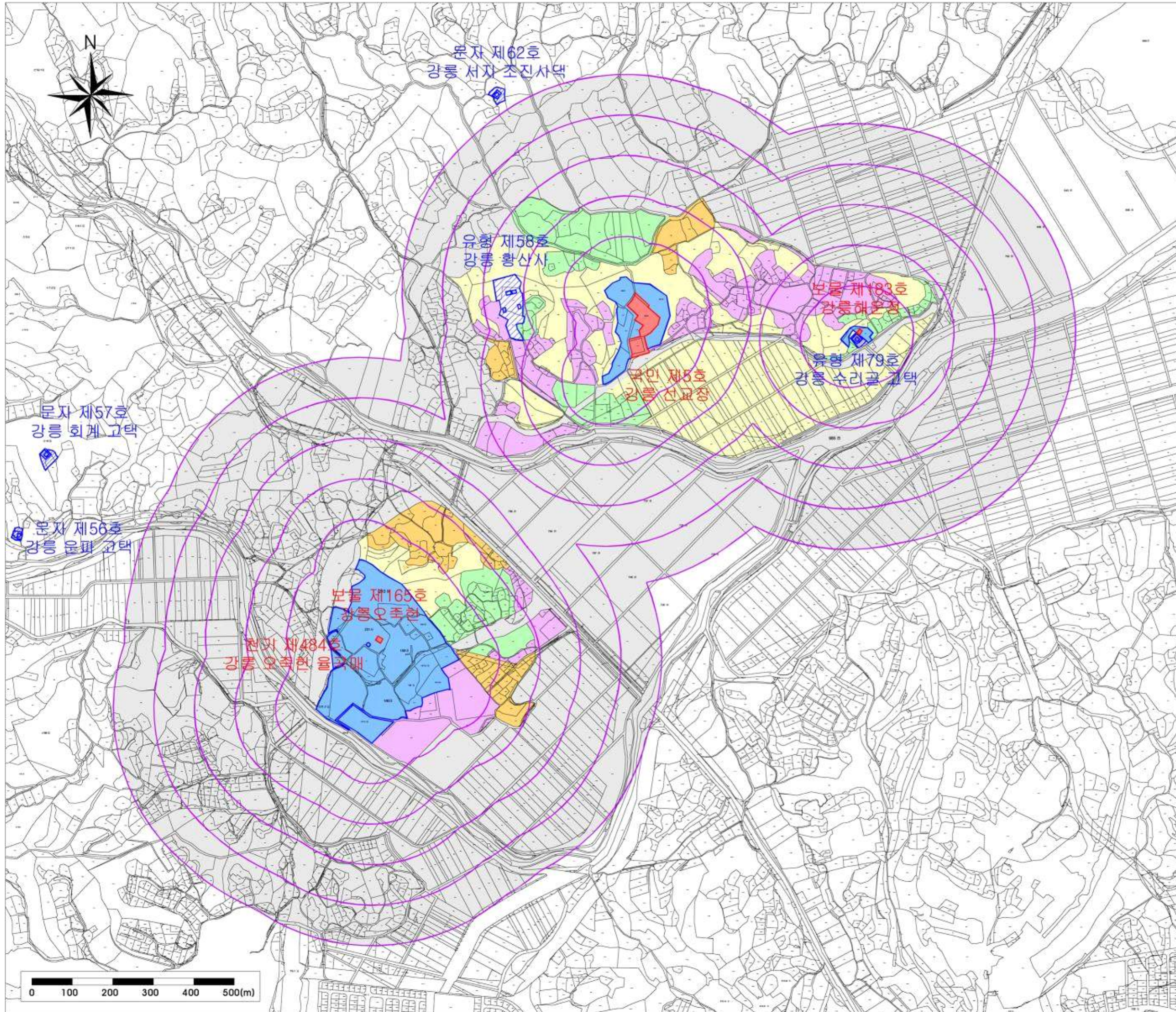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1구역	원지형 보존구역		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가·건축 허용
2구역	최고높이 5m 이하 산속 · 증축 허용(1층 이하)	최고높이 7.5m 이하 산속 · 증축 허용(1층 이하)	
3구역	최고높이 8m 이하 산속 · 증축 허용(2층 이하)	최고높이 12m 이하 산속 · 증축 허용(2층 이하)	
4구역	최고높이 11m 이하 산속 · 증축 허용(3층 이하)	최고높이 15m 이하 산속 · 증축 허용(3층 이하)	
5구역	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.		
공통 사항	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		

축척

1 : 9,500

■ 강릉 선교장 외(국가민속문화재 제5호)

<조정안>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(신청안)

국가민속문화재 제5호
강릉 선교장 외

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보호구역
- 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◦ 개별심의	
2구역	◦ 최고높이 5m이하	◦ 최고높이 7.5m이하
3구역	◦ 최고높이 8m이하	◦ 최고높이 12m이하
4구역	◦ 최고높이 11m이하	◦ 최고높이 15m이하
5구역	◦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◦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◦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)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령과 하수도법), 및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. ◦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. ◦ 높이 3m이상의 철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 등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 (지하층의 철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. 단, 5구역 제외) ◦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(단, 5구역 제외) ◦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. ◦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령」에 따라 처리함. ◦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임토조사·표본조사·시굴조사·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)를 실시함. ◦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. 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. 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

축척 1 : 9,500